혁신지원사업단 운영 규정

제정 2019.06.01 2차 개정 2020.08.24 4차 개정 2022.05.02 개정 2020.05.25 3차 개정 2022.03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우송정보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단」(이하'사업단'이라 함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국고보조 금 집행의 투명성, 공정성, 객관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사업단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〈개정 2022.5.2〉
- ②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연차별 계획수립 〈개정 2022.5.2〉
- ③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연차별 계획에 의한 사업운영 〈개정 2022.5.2〉
- ④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연차별 계획에 의한 결과보고 〈개정 2022.5.2〉
- ⑤기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〈개정 2022.5.2〉
- 제3조(사업전담조직) ①사업단에는 사업단장, 사업부단장,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1.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총장이 임명한다.
 - 2. 사업부단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부단장은 해당업무에서 사업단장을 보좌하며, 사업단장 궐위시 단장을 대행한다. 〈개정 2022.5.2〉
 - 3. 대학혁신위원회, 대학혁신운영위원회, 사업비관리위원회, 자체평가위원회 및 영역별 추진회를 둘수 있으며, 사업단에서 별도로 위촉한다. <개정 2022.5.2>
 - 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운영팀 및 재정관리팀을 둔다.
 - 1. 사업운영팀은 사업단장을 보좌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관리 운영한다.
 - 2. 재정관리팀은 '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'의 계정관리 지침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집행 및 관리한다.
 - ③사업전담조직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.
- 제4조(대학혁신위원회) ①대학혁신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교무위원 중심으로 주요 사업의 사업단장 및 학생대표 등 재학생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 〈개정 2022.5.2〉
 - ②대학혁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5.2>
 - 1. 대학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계획의 달성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 및 사업 전반의 성과에 대한 유기적 관리·운영〈개정 2022.5.2〉
 - 2. 대학 자체투입재원, 중앙정부·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운영의 총괄적 점검 <개정 2022.5.2>
 - 3. 대학의 투명성 ·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회계 모니터링 〈개정 2022.5.2〉

- 4. 그 밖의 사업 관련 주요 사항
- ③대학혁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정 2022.5.2〉
 - 1. 세부 사업 항목의 변경 심의
 - 2. 전체예산의 세부사업간 예산 조정 심의
 - 3. 신규 사업의 추가 심의
- 4.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의 변경 심의
- 5. 자체 사업운영규정의 변경 심의
- 6.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
- ④대학혁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2.5.2>
- 제5조(대학혁신운영위원회) ①대학혁신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교무위원급으로 구성하되, 외부전문가, 재학생으로 구성하며, 사업단장이 위촉한다. 〈개정 2022.5.2〉
 - ②대학혁신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영역별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2.5.2>
 - ③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5.2>
 - 1.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<개정 2022.5.2>
 - 2.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〈개정 2022.5.2〉
 - 3. 사업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〈개정 2022.5.2〉
 - 4.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규정(지침) 수립 및 변경 〈개정 2022.5.2〉
 - 5. 신규 사업 및 사업변경 계획 발의 〈개정 2022.5.2〉
 - 6.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사항 <개정 2022.5.2>
 - 7. 삭제 <2022.5.2.>
 - ④대학혁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2.5.2>
- **제6조**(자체평가위원회) ①자체평가위원회는 내부교직원, 외부 전문가 및 학생으로 구성 하며 외부전문가를 과반수(50%) 이상으로 사업단장이 위촉한다. 〈개정 2022.5.2〉
 - ②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실태 평가 및 자문
 - 2.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달성 여부 평가 및 자문
 - 3. 사업비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평가 및 자문
 - 4. 결과보고에 따른 종합평가 및 자문
 - 5. 그 밖의 사업평가에 관련된 주요 사항
- 제7조(사업비관리위원회) ①사업비관리위원회는 내부교직원으로 구성하며, 사업단장이

위촉한다. 〈신설 2022.5.2.〉

- ②사업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신설 2022.5.2.〉
- 1. 사업비 집행계획 및 현황 관리 〈신설 2022.5.2.〉
- 2.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관리 〈신설 2022.5.2.〉
- 3.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사항 〈신설 2022.5.2.〉
- **제8조**(예산편성및집행기준) ①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은 교육부(한국연구재단) "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"를 따른다.
 - ②사업비 집행절차는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업무편람을 따른다. 다만, 업무편람에서 제시하지 않은 업무는 대학의 회계집행 기준을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,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규정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,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규정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고,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규정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하고,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